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25
----------	-----

2021. 6. 23.(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6월 9일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 나.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안 제3조)
-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2020. 8. 5.)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 청년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행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함.
  - 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현행 15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것임.
  - 현행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5세부터 19세까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연령 범위에 속하는 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에서 청년 연령 범위 상한선을 39세로 유지함. 이는 현재 충북의 청년대상 조직 및 사업(청년희망센터, 청년 광장 운영 등)이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직 및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른 34세로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상한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34세로 규정한 곳은 5곳에 그치고 있음.

<17개 광역시·도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범위(‘21. 6. 7. 기준)>

청년 연령 상한선	해당 시·도
39세(12개소)	충북,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34세(5개소)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 물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연령 범위 겹침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서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안 제6조, 제7조, 제9조는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개정된 것으로 타당함.

## □ 청년 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9조 제5항은 현행 “~ 위촉직 위원은 ~ 청년을 5명 이상 포함”을 “~ 위촉직 위원은 ~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으로 개정된 것으로, 도 내 청년의 위원으로서 도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9조제7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연임 기한과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의 연임기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연임 기한에 제한을 두어 많은 도민(청년 포함)이 위원회를 통한 정책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1조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 조정,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다수의 도 내 청년이 위원으로서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5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안 제3조)
-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제외사유서 붙임)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사회·문화”를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15세 이상 39세 이하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충청북도 청년위원회)”를“(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명”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년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년기본법</u>」에 따라 <u>경제·사회·문화</u> ----- ----- ----- ----- ----- -----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15세 이상 39세 이하</u>의 사람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 ----- ----- ----- ----- ----- ----- -----.</p> <p>1. -----<u>19세 이상 39세 이하인</u>----- <u>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u></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충청북도 <u>청년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 -----</p>

5. (생략)

③·④ (생략)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충청북도 청년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경제·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9조(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심의·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② -----  
-- 심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실·국장-----  
-.

⑤ -----  
-----  
-----

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 2분의 1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취

###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 1. 첨부제의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사유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법 내용 반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3.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